

[붙임 18]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 업 명 :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
- 대 상 : Oracle WEB/WAS/DBMS SW 1식
- 발주기관 : 경 찰 청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 에티버스

제1조(목적)

이 협약은 「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
-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 금액)

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 132,000,000원(금 일억삼천이백만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)

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30일

발주기관 경 찰 청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 ㈜ 에티버스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

- 사업명 :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
- 대 상 : 리포팅 툴 SW(CLIP report 5.0) 1식
- 발주기관 : 경 찰 청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한컴이노스트립

제1조(목적)

이 협약은 「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
-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 금액)

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 26,000,000원(금 이천육백만원)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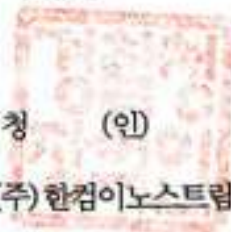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

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30일

발주기관 경 찰 청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 (주)한컴이노스트립

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계약서

- 사업명 :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
- 대 상 : PUSH SW(TITAN NeuralWorks 1.0) 1식
- 발주기관 : 경 찰 청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(주)

제1조(목적)

이 협약은 「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
-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 금액)

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 38,000,000원(금 삼천팔백만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 발급)

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계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30일

발주기관 경 찰 청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(주) 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계약서

- 사 업 명 :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
- 대 상 : 미들웨어 NX Gate 1식
- 발주기관 : 경 찰 청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위지원시스템즈

제1조(목적)

이 협약은 「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
-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- 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 금액)

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 100,000,000원(금 일억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 발급)

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계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7월 30일

발주기관 경 찰 청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 (주)위지원시스템즈

